

#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5. 1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4월 2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5월 16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정일

### 가. 제안이유

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상위법 개정,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·정비하여 우리 구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재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

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2항 : 6호 신설  
- “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” 추가

#### 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- 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급) : 변경  
- 상위법 조항변경 : 제25조→31조  
- 장려금, 보상금 지급 →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

#### 3)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례 정비

- 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: 변경
  - 시민 → 구민,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
  -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, 부회장 명칭을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 변경
  - 위원의 임기 연임조항 신설 : 한차례 연임 가능
- 제5조의 2(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 : 신설
- 4)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변경, 기타 맞춤법 수정
  - 제7조(과태료 부과징수)~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: 삭제
    - 과태료부과·징수 사항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
  - 제11조(준용규정) : 변경
    - 지방세 징수의 예 →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
  - 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: 삭제
    - 과태료 귀속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- 조금씩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포구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의 신설은 구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